

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·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332
----------	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1년 4월 22일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서울시경찰청장과의 합의를 통해 자치경찰사무를 추가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거나, 위원회 회의와 심의·의결에 대한 통보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수정함.

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서울시경찰청장과의 합의로 자치경찰사무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, 별표의 자치경찰사무를 변경하는 경우 서울시경찰청장의 의견 청취를 강행규정으로 수정함(안 제2조).
- 위원장이 시장에게 상임위원을 제청하는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정하도록 함(안 제6조제2항).
- 법령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심의·의결 사항에 대한 통보 등 위원회 회의 운영 규정을 신설함(안 제8조).
- 회의 참석과 답변 대상자를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등 관계공무원과 전문가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 명확히 함(안 제9조).

- 실무협의회에 참여하는 관계기관에 서울특별시교육청을 추가함(안 제12조).
- 실무협의회 협의결과는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(안 제13항제2항).
- 조례의 시행 시점을 공포한 날부터로 수정함(부칙).

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·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·운영 등에 관한
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을 각각 제2항과
제3항으로 하여,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별표 1을 개정할
필요가 있을 경우 영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
규모로 정해질 수 있도록 미리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의 의견을 청
취한다.

③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자치경찰
사무가 국가경찰사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다른 광역시·특별
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사무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
노력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안 제3조 중 “시장”을 “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
으로, “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”를 “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
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안 제5조제1항 중 “경우”를 “경우에는”으로, “사람에게 자격요
건”을 “사람에게 위원으로 추천받은 사람의 자격요건”으로 한다.

안 제6조제2항 중 “상임위원을 선정한다.” 를 “상임위원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한다.” 로 한다.

안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

제7조(의안의 제안 및 상정) ① 시장 또는 위원장은 법 제24조에 따른 위원회 소관 사무 범위에서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안할 수 있다.

② 위원은 재적위원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안할 수 있다.

③ 위원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안된 의안을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 상정한다.

안 제8조부터 안 제20조까지를 각각 안 제9조부터 안 제21조까지로 하고, 안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(위원회의 회의 등) ① 위원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소집·개최한다. 이 경우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월 1회 이상 소집·개최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는 심의·의결한 사항을 시장과 경찰청장, 서울특별시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안 제9조(원안 제8조) 중 “위원장은 안건을” 를 “위원장은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을” 로, “경우, 관계 공무원 및 경찰관과” 를 “경우에는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및” 으로 한다.

안 제10조(원안 제9조)제2항 중 “당사자는” 을 “해당 안건의 당사자는” 으로 한다.

안 제11조(원안 제10조) 중 “위원의 참석·심사수당, 참석비 및 교통비, 식비, 숙박비 등은” 을 “위원회 위원의 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” 으로 한다.

안 제12조(원안 제11조)제1항 중 “서울특별시, 경찰청, 서울특별시 경찰청 등과 실무협의회를” 을 “제13조제1항의 사항을 협의하는 실무협의회를” 로, 같은 조 제2항 중 “서울특별시경찰청” 을 “서울특별시경찰청, 서울특별시교육청” 으로 한다.

안 제13조(원안 제12조)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실무협의회 협의결과는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경찰청장, 서울특별시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각 관계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 처리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.

안 제18조(원안 제17조)제1항 중 “「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

관한 조례」에 따라” 를 “법 제35조제2항 및 「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” 로, “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등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, 처우 등의” 를 “후생복지, 처우 등의” 로, 같은 조 제2항 중 “직원에게도 필요한 경우” 를 “직원에게” 로 한다.

안 제19조(원안 제18조) 중 “출석·답변” 을 “출석하여 답변” 으로 한다.

안 제20조(원안 제19조)제2항 중 “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규칙 (이하 “위원회규칙” 이라 한다)” 를 “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세칙(이하 “위원회세칙” 이라 한다)” 로 한다.

안 제21조(원안 제20조)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1조(위원회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세칙으로 정한다.

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제정안	수정안
<p>제2조(생활안전, 교통,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<u>별표 1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시민의 생활안전, 교통편의, 지역경비 등과 관련하여 시급히 수행하여야 할 사무로서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과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합의한 사무는 자치경찰사무에 추가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<u>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제1항에 따른 별표 1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영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적절한 규모로 정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</u></p> <p>④ <u>위원회는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국가경찰사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다른 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사무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</u></p>	<p>제2조(생활안전, 교통,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) ① (원안과 같음)</p> <p><삭 제></p> <p>② <u>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별표 1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영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적절한 규모로 정해질 수 있도록 미리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의 의견을 청취한다.</u></p> <p>③ <u>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국가경찰사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다른 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사무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</u></p>
<p>제3조(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고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<u>시장</u> 소속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인 <u>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</u>를 둔다.</p>	<p>제3조(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고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<u>서울특별시 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</u> 소속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인 <u>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</u>를 둔다.</p>
<p>제5조(위원회 위원의 임명방법) ① 시장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 추천권자(이하 이 조에서 “추천권자”라 한다)로부터 위원으로 임명할 사람을</p>	<p>제5조(위원회 위원의 임명방법) ① 시장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 추천권자(이하 이 조에서 “추천권자”라 한다)로부터 위원으로 임명할 사</p>

제정안	수정안
<p>추천받은 <u>경우</u> 추천권자 또는 추천받은 <u>사람에게 자격요건</u>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람을 추천받은 <u>경우에는</u> 추천권자 또는 추천받은 <u>사람에게 위원으로 추천받은 사람의 자격요건</u>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.</p> <p>② (원안과 같음)</p>
<p>제6조(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임명방법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장은 임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고, 해당 회의에서 시장에게 제청할 <u>상임위원을 선정한다.</u>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6조(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임명방법) ① (원안과 같음)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장은 임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고, 해당 회의에서 시장에게 제청할 <u>상임위원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한다.</u></p> <p>③ (원안과 같음)</p>
<p>제7조(의안의 발의 및 상정) ① 시장과 위원장은 법 제24조에 따른 위원회 소관 사무 <u>범위 안에서</u>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<u>단독으로 발의</u>할 수 있다.</p> <p>② 위원은 재적위원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<u>발의</u>할 수 있다.</p> <p>③ 위원장은 <u>발의된</u> 의안을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 상정한다.</p>	<p>제7조(의안의 제안 및 상정) ① 시장 또는 위원장은 법 제24조에 따른 위원회 소관 사무 <u>범위에서</u>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<u>제안</u>할 수 있다.</p> <p>② 위원은 재적위원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<u>제안</u>할 수 있다.</p> <p>③ 위원장은 <u>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안된</u> 의안을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 상정한다.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 설></u></p>	<p>제8조(위원회의 회의 등) ① 위원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를 소집·개최한다. 이 경우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월 1회 이상 소집·개최한다.</p> <p>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③ 위원회는 심의·의결한 사항을 시장과 경찰청장, 서울특별시경찰청장에게 통</p>

제정안	수정안
<p>제8조(관계자의 위원회 참석·답변 등) <u>위원장은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, 관계 공무원 및 경찰관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참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</u></p>	<p><u>보하여야 한다.</u></p> <p>제9조(관계자의 위원회 참석·답변 등) <u>위원장은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참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9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(생략)</p> <p>② <u>당사자는</u>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10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(원안과 같음)</p> <p>② <u>해당 안건의 당사자는</u>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</p> <p>③ (원안과 같음)</p>
<p>제10조(위원의 수당) <u>위원의 참석·심사수당, 참석비 및 교통비, 식비, 숙박비 등은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별표 5 및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 따른다.</u></p>	<p>제11조(위원의 수당) <u>위원회 위원의 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별표 5 및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 따른다.</u></p>
<p>제11조(실무협의회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<u>서울특별시, 경찰청, 서울특별시경찰청 등과 실무협의회를</u> 운영할 수 있다.</p> <p>② 실무협의회는 위원회, 서울특별시 관계부서, 경찰청, <u>서울특별시경찰청</u> 등 관계기관의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12조(실무협의회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<u>제13조제1항의 사항을 협의하는 실무협의회를</u> 운영할 수 있다.</p> <p>② 실무협의회는 위원회, 서울특별시 관계부서, 경찰청, <u>서울특별시경찰청, 서울특별시교육청</u> 등 관계기관의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③ (원안과 같음)</p>
<p>제12조(실무협의회 회의) ① 실무협의회는 다</p>	<p>제13조(실무협의회 회의) ① 실무협의회는</p>

제정안	수정안
<p>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.</p> <p>1.~ 4. (생략)</p> <p>② 실무협의회 <u>협의결과</u>는 경찰청장, 서울특별시경찰청장 등 <u>소관 기관장</u>에게 통보하고 <u>각 기관</u>의 소관 사무 <u>처리</u>시 반영할 수 있다.</p>	<p>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.</p> <p>1.~4. (원안과 같음)</p> <p>② 실무협의회 <u>협의결과</u>는 <u>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</u> 경찰청장, 서울특별시경찰청장 등 <u>관계기관의 장</u>에게 통보하고 <u>각 관계기관의 장</u>은 소관 사무 <u>처리</u>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.</p>
제13조~제16조 (생략)	제14조~제17조 (원안과 같음)
<p>제17조(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) ① 시장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「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이 적용받는 <u>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등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, 처우 등의 지원</u>을 할 수 있다.</p> <p>② 시장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아닌 <u>직원에게도 필요한 경우</u>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	<p>제18조(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) ① 시장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<u>법 제35조제2항 및 「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</u>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이 적용받는 <u>후생복지, 처우 등의 지원</u>을 할 수 있다.</p> <p>② 시장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아닌 <u>직원에게</u>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
<p>제18조(위원장의 의회 출석·답변) 위원장은 「지방자치법」 제42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가 요구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<u>출석·답변</u>하여야 한다.</p>	<p>제19조(위원장의 의회 출석·답변) 위원장은 「지방자치법」 제42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가 요구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<u>출석하여 답변</u>하여야 한다.</p>
<p>제19조(위원회의 감사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 절차와 방법 등은 <u>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규칙</u>(이하 “위원회규칙”이라 한다)으로 정한다.</p>	<p>제20조(위원회의 감사) ① (원안과 같음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 절차와 방법 등은 <u>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세칙</u>(이하 “위원회세칙”이라 한다)으로 정한다.</p>
<p>제20조(위원회규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<u>위원회 규칙</u>으로 정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	<p>제21조(위원회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<u>위원회 세칙</u>으로 정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
<p>제1조(시행일) <u>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	<p><u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u></p>

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·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과 「자치경찰사무와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자치경찰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생활안전, 교통,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) ①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제2항 및 「자치경찰사무와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는 별표 1과 같다.

②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별표 1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영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질 수 있도록 미리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의 의견을 청취한다.

③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국가경찰사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다른 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사무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3조(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고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

다) 소속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인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4조(위원회의 구성)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,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.

제5조(위원회 위원의 임명방법) ① 시장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 추천권자(이하 이 조에서 “추천권자”라 한다)로부터 위원으로 임명할 사람을 추천받은 경우에는 추천권자 또는 추천받은 사람에게 위원으로 추천받은 사람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위원으로 추천받은 사람이 법 제20조제2항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같은 조 제7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당 사실을 추천권자에게 통보하고 재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.

제6조(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임명방법) 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위원을 임명하고 위원 중 1명을 위원장으로 임명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장은 임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고, 해당 회의에서 시장에게 제청할 상임위원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임명한다.

제7조(의안의 제안 및 상정) ① 시장 또는 위원장은 법 제24조에 따른 위원회 소관 사무 범위에서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안할 수 있다.

② 위원은 재적위원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안할 수

있다.

- ③ 위원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안된 의안을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 상정한다.

제8조(위원회의 회의 등) ① 위원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소집·개최한다. 이 경우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월 1회 이상 소집·개최한다.

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- ③ 위원회는 심의·의결한 사항을 시장과 경찰청장, 서울특별시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9조(관계자의 위원회 참석·답변 등) 위원장은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참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10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
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

이었던 경우

5.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위원장이 승인한 경우

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제11조(위원의 수당) 위원회 위원의 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별표 5 및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2조(실무협의회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13조제1항의 사항을 협의하는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.

② 실무협의회는 위원회, 서울특별시 관계부서, 경찰청, 서울특별시경찰청,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관계기관의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.

③ 실무협의회는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13조(실무협의회 회의) ①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.

1.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에 관련된 사항
2. 국가경찰사무·자치경찰사무의 협력·조정
3.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 사항
4. 그 밖에 실무협의회 구성원 간 공동으로 협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

② 실무협의회 협의결과는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경찰청장, 서울특별시 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각 관계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 처리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.

제14조(실무협의회 간사) ① 실무협의회에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.

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기구 소속 과장이 된다.

제15조(실무협의회 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 구성, 회의개최,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.

제16조(사무기구와 소속 직원 등) ① 위원회는 소관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법 제27조에 따라 사무기구와 소속 직원을 둔다.

② 사무기구의 조직과 정원은 「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와 「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」에 따른다.

③ 제2항의 조직 및 정원에 대하여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17조(예산) 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의·의결하기 전에 경찰청장에게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제18조(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) ① 시장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법 제35조제2항 및 「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이 적용받는 후생복지, 처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9조(위원장의 의회 출석·답변) 위원장은 「지방자치법」 제42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가 요구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.

제20조(위원회의 감사) ① 위원회는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중복감사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·실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 절차와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세칙(이하 “위원회세칙”이라 한다)으로 정한다.

제21조(위원회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세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생활안전, 교통,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

(제2조 관련)

가.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

자치경찰사무	범위 기준	구체적 사항 및 범위
1) 생활 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	가)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시설 설치·운영	① 범죄취약지역 환경 개선 등 지역 범죄 예방환경설계(CPTED) 사업 추진 ②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지원
	나)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진단	① 지역·건물의 범죄취약요소 현장진단 및 점검·관리 ② 범죄예방 강화구역 관리 등 범죄예방진단 전담 경찰관 운영
	다)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순찰과 범죄예방 활동 시행·관리	① 시기·장소별 범죄예방활동 시행·관리 ②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시행
2) 주민 참여 방범 활동의 지원 및 지도	가) 범죄예방을 위한 주민 참여 지역협의체 구성·운영	① 생활안전협의회, 자율방범대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주민 참여 지역협의체와의 협업 및 지원·지도
	나) 주민 참여형 범죄예방 활동 시행·관리	① 지역주민 대상 범죄예방 요령 등 홍보활동 ② 주민 참여형 범죄예방활동
3) 안전 사고 및 재해·재난 시 긴급구조지원	가)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주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구조지원	①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안전 사고 및 재해·재난 발생 시 지역주민 안전확보를 위한 긴급구조지원
	나) 재해 발생 시 지역의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 등	① 재해발생지역의 사회질서 유지 ② 재해발생지역의 교통관리 등
	다)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의 긴급구조지원 활동 등	그 밖에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의 지역 내 긴급구조지원 활동

4) 아동·청소년·노인·여성·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·학교·성폭력 등의 예방	가) 아동·노인·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·노인·장애인에 대한 보호활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아동·노인·장애인 학대 예방활동 ② 아동·노인·장애인 학대 사안대응 ③ 아동·노인·장애인 학대 피해자 보호기관 등 연계·지원 ④ 아동·노인·장애인 학대 관련 학대예방 전담 경찰관 운영
	나) 아동·청소년·노인·여성·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실종 예방·대응 활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실종 사전예방활동 ② 실종·유괴 경보 체계 구축·운영 ③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 대상시설 지도·감독 ④ 유전자 채취 및 보호시설 등 일제수색 운영
	다) 아동 대상 범죄예방 및 아동안전 보호 활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아동안전지킴이 등 아동안전보호 인력 운영 및 선발·배치·감독 ② 아동안전지킴이집 등 아동안전 보호기관 관리 및 운영·교육·홍보 ③ 그 밖에 아동 대상 범죄예방 및 아동안전 보호활동
	라)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·보호 활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청소년 비행 사전방지 활동 ② 청소년 선도·보호활동 및 청소년 참여제도 운영
	마) 가정폭력범죄 예방과 피해자 등 보호 활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·홍보 ②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, (긴급) 임시조치 ③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·지원 ④ 가정폭력 관련 학대예방 전담 경찰관 운영
	바) 학교폭력의 근절·예방과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활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학교폭력 범죄근절 및 예방활동 ②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③ 학교폭력 예방 전담 경찰관 운영
	사) 성폭력 예방과 성폭력 피해자 등 보호 활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②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·지원

	아)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아동·청소년·노인·여성·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및 가정폭력·학교폭력·성폭력 등 예방 업무	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아동·청소년·노인·여성·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및 가정폭력·학교폭력·성폭력 등 예방 업무
5)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·단속 (다만,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)	가) 경범죄 위반행위 지도·단속 등 공공질서 유지	① 경범죄 위반행위 단속 ② 지역 내 기초질서 확립 홍보
	나) 공공질서에 반하는 풍속·성매매사범 및 사행행위 지도·단속	① 풍속영업의 지도·단속 ② 성매매 단속 ③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 ④ 사행행위 지도·단속
	다)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·단속 업무	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·단속 업무
6)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	가)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관련 112신고(일반 신고를 포함한다) 처리	① 가정폭력, 학교폭력, 아동학대, 실종 등 자치경찰 수사사무 관련 신고 처리 ② 풍속영업, 그 밖의 경범, 주취자 등 지역질서유지 관련 신고 처리 ③ 분실습득, 보호조치, 상담문의 등 주민생활 관련 신고 처리
	나) 지하철, 내수면 등 일반적인 출동이 어려운 특정 지역에서 주민의 생명·신체·재산의 보호를 위한 경찰대 운영	① 지하철경찰대 설치·운영(수사 제외) ② 내수면경찰대 설치·운영 ③ 관광경찰대 설치·운영

	다) 유실물 보관·반환·매각·국고귀속 등 유실물 관리	① 유실물 관련 보관·반환·매각·국고귀속 등 처리업무 ② 유실물 관리 시설의 설치 및 운영
	라) 「경찰관 직무집행법」 제4조에 따른 응급구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유관기관 협력	① 응급구호대상자 관련 보호조치 ② 응급구호대상자 휴대 무기·흉기 임시영치 ③ 주취자응급의료센터 운영 지원 ④ 그 밖에 응급구호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
	마)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	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

나. 지역 내 교통 활동에 관한 사무

자치경찰사무	사무의 범위 기준	구체적 내용
1)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·단속	가) 교통법규 위반 지도·단속, 공익신고 처리 등	① 교통법규 위반 단속 ②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처리
	나) 음주단속 장비 등 교통경찰용 장비 보급·관리·운영 등	① 음주단속장비 구매·보급·관리 ② 교통단속장비 구매·보급·관리
2)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·설치·관리	가) 교통사고 예방,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·관리·운영	① 교통안전시설 운영계획 수립 및 설치·관리·운영 ② 교통안전시설 및 유사 교통안전시설 무단 설치 단속 ③ 그 밖에 도로 위험 방지와 교통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관련 조치
	나) 도로교통 규제 관련 지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	① 지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② 도로교통 규제 및 교통안전 시설 심의·결정

	다)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·설치·관리·운영	①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·설치·관리·운영
3)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	가)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	① 지역주민 대상 교통안전 교육
	나) 교통안전에 대한 홍보	① 지역주민 대상 교통안전 홍보
4)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	가) 교통활동 지원 협력단체에 대한 운영·관리	① 모범운전자회·녹색어머니회 등 교통활동 지원 협력단체 구성·관리
	나) 주민참여형 교통안전활동 지원 및 지도	① 주민참여형 교통안전 활동 선발·관리 등 지원 ② 주민참여형 교통안전 활동 활성화를 위한 홍보·안내
5) 통행 허가,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,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	가) 차마의 안전기준 초과 승차, 안전기준 초과적재 및 차로폭 초과 차 통행허가 처리	① 안전기준 초과승차, 안전기준 초과적재 및 차로폭 초과차 통행허가 처리
	나) 도로공사 신고접수, 현장점검 및 지도·감독 등	① 도로공사 신고접수 및 도로점용허가 관련 교통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필요 조치
	다)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신고접수·관리 및 관계 기관 합동 점검	① 어린이통학버스 신고·접수 관리 및 안전점검
	라)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·관리	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·관리
	마)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신청 처리	①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 신청·관리
	바) 주·정차 위반차량 견인대행법인등 지정	① 견인대행법인등 지정 신청·관리
6)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	가) 지역주민의 교통안전 관련 112신고(일반 신고를 포함한다) 처리	① 교통사고 신고처리 ② 교통안전 및 소통 관련 신고처리

사무	나) 운전면허 관련 민원 업무	① 운전면허 발급·재발급·갱신 신청·접수·교부 ②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·접수 ③ 국제운전면허 신청접수 및 교부 ④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⑤ 그 밖에 운전면허 관련 민원 업무
	다) 지역교통정보센터 운영 및 교통정보 연계	① 지역교통정보센터 운영 ② 교통정보 연계 업무
	라) 정체 해소 등 소통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관리	① 상습 정체 구간 주요 교차로에서의 교통관리 ② 안전사고·재해·재난 발생 시 이동로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통제 및 관리 ③ 그 밖에 도로통제 등으로 교통정체 우려시 관련 기관의 사전대책 협의
	마) 지역 내 교통안전 대책 수립·시행	① 지역내 교통안전대책 수립·시행 ② 지역 교통안전 분야 유관기관 협업
	바) 교통안전 관련 기관 협의 등	① 도로법, 교통안전법 등 교통관련 법령상 유관기관 협의 ②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

다.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

자치경찰사무	사무의 범위 기준	구체적 내용
-	가.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등의 교통질서 확보 및 교통안전 관리 지원	①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교통안전 대책 협의 및 교통관리 지원 ② 행사장 주변 교통안전활동 지원
	나.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 지원	① 다중운집 행사 안전대책 협의 및 행사장 안전관리·안전활동 지원

비고 1: 위 표의 나목 지역 내 교통 활동에 관한 사무 중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3호의 고속도로에서 이루어지는 사무는 제외한다.

비고 2 : 위 표의 가목 ‘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’ 중 ‘지역 내 주민’은 ‘지역 내에 일상생활의 상당부분을 영위하는 모든 사람’으로 본다.